

## 이의신청 심사 결정서

이의신청 농업경영체	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이의신청 내용	처분내용	통지서 (공고문) 번호	통지(공고) 일자	
		처분결과 및 사유		
	이의신청 의견			
심사결정	결정	(수용, 기각)		
	사유			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※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-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-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임야 관련 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)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  -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
또는 산림청장

직인